

II.정정보도청구사례

보도내용은 사실과 일치하며,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정정보도청구는 이유없다

대전지방법원 1998. 8. 7.자 판결 (97가합8407)

事實概要

대전지방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오영권 부장판사)는 1998년 8월 7일 나사렛예수병원 영안실을 운영하는 백 씨가 문화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문제가 된 방송 중 ^생존가능성이 있었다는 보도내용은 없었고 냉동창고로 곧바로 실려갔다는 보도는 사실과 일치하며, 나머지 원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문화방송은 1997년 6월 29일 뉴스데스크와 지방뉴스를 통해 ^교통사고 구급환자가 나사렛예수병원 영안실 직원에 의하여 병원 응급실이 아닌 병원 영안실의 냉동창고로 실려갔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자 원고는 ^교통사고환자가 생존가능성이 있는 환자였다)는 것과 ^사고환자를 영안실로 옮겨 곧바로 냉동처리 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사고현장에서 간호사와 구급대원이 환자의 사망을 확인하였고 의사의 사체검안서가 작성된 후 냉동창고에 안치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했다(97대전중재8, 97서울중재165). 그러나 중재결과 문화방송측이 현재 조사 중인 사건이므로 정정할 수 없다고 하여 불성립결정되자 원고는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判 決 文

사 건 : 97가합8407정정보도

원 고 : 백

대 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상순, 송동호

피 고 :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대표이사 이득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민

변론종결 : 1998. 7. 25.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피고는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10일 내에 MBC 텔레비전에서 오후 9:00에 진행하는 。MBC 9시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의 진행 중에 별지 정정보도문 기재 내용을 방송·방영하라는 판결.

이 유 :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별지 보도사실 기재와 같이 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을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정정보도를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방송이 나사렛예수병원을 상대로 한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방송과는 개별적 관련성이 없으므로 원고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자신의 이행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피고 주장의 위 사유는 본안에서 청구권 유무로서 판단될 사유일 뿐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영안실의 실제의 운영자로서 이 사건 방송에 대한 실제의 이해관계를 가진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2. 본안(이 사건 방송의 진실성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의 1 내지 20, 22 내지 27, 30 내지 60, 63 내지 76, 155 내지 199, 248 내지 251, 253, 갑 제10호증의 1 내지 7, 9 내지 15,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영상, 증인 의 증언 및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2호증의 일부기재는 원고의 일방적 기재이므로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소외 나사렛예수병원의 병원장 소외 안 으로부터 위 병원의 영안실을 임차보증금 300,000,000원에 임차하여 위 병원과 독립하여 위 영안실을 운영하던 중 위 병원에서 사망하는 환자의 숫자가 많지 아니하며 위 영안실 운영이 어렵게 되자 구급차를 구입하여 교통사고 현장 등지에서 위 병원 밖의 사망자를 위 영안실로 호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영안실을 운영하기로 하여, 구급차 3대를 구입하여 위 병원의 소유 명의로 등록해 놓아 위 병원의 응급실 소속 구급차로 위장해 놓고, 실제로는 원고가 이를 사용하고 그 운행비용을 부담하였으며, 위 영안실은 위 병원의 건물에 부속되어 있었거나 위 병원의 통제나 감독을 받지 아니하면서 독립하여 운영되고 있었다.

(2) 그러던 중 1997. 5. 21. 00:05경 대전 유성구 매봉교에서 소외 망 조 운전의 호 무쏘승용차가 매봉교 교각을 들이받고 다리 밑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같은 날 00:17경 간호사 소외 송 을 태운 119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였고, 이어서 00:19경 소외 권 을 구조대장으로 하는 소방서 소속의 119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하여 위 사고로 인한 부상자 승객 소외 진 과 위 조 을 구조하였다.

(3) 위 사고 직후 119구조대원 소외 박 와 위 송 이 위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즉시 각 위 조 을 살펴보았는데 동맥의 반응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위 박 , 권 이 위 조 을 위 사고차량의 밖으로 꺼내 들것에 눕혔고, 한편 위 사고 직후 곧 사고현장의 견인차 운전자 소외 김 으로부터 전화연락을 받고 위 영안실의 구급차를 타고 위 사고현장에 출동해 있던 위 영안실 직원 소외 김 , 백 은 위 구조과정을 지켜보다가 구조된 위 조 을 들것에 실고 위 매봉교 위로 올라와 위 구급차로 옮겼다.

(4) 위 현장에 00:37경 도착한 경찰관 소외 유 , 박 은 위 조 을 들것에 실고 다리 위로 올라오는 위 김 , 백 에게 위 조 의 상태를 물었는 바, 위 김 등은 위 조 이 죽은 것 같다고 대답하였고, 그러나 위 유 등은 빨리 병원으로 후송하라고 하면서 어느 병원으로 갈 것이냐고 물었고 이에 위 김 등은 나사렛예수병원으로 간다고 대답하였다.

(5) 그러나 위 김 등은 조 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위 조 을 구급차에 실고서 같은 날 01:00경 위 병원의 응급실이 아닌 원고가 운영하는 위 병원의 위 영안실로 호송하였다.

(6) 같은 날 01:30경에는 위 조 의 처가, 01:40경에는 위 조 의 아버지 소위 조 이 위 영안실에 도착하였는데, 이 때는 이미 위 조 은 냉동창고(사체보관소)에 안치되어 있었다.

(7) 한편, 피고는 텔레비전의 1997. 6. 29. 。MBC 21:00 뉴스데스크。에서 [냉동창고 ‘생매장’] 이라는 제목하에 “교통사고 구급환자가 나사렛예수병원 영안실 직원에 의하여 위 병원 응급실이 아닌 위 병원의 영안실의 냉동창고로 실려갔다.” 는 요지의 별지 보도사실과 같이 이 사건 방송을 하였다.

나. 쌍방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이 사건 방송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고 피고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 보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사실에 따라 청구취지와 같이 정정보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방송이 진실할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가사 진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방송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 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의 위 행위는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1) 서론

정정보도청구는 사실과 다른 보도가 있었음을 전제로 사실에 따라 보도내용의 정정을 구하는 청구로서 사실과 다른 보도가 있었고, 정정보도를 구하는 내용이 사실이어야 하는 바, 원고가 구하는 위 정정보도문은 ① 위 조 이 생존가능성이 있는 교통사고환자였다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부분, ② 위 환자를 영안실로 옮겨 곧바로 냉동처리됐다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부분, ③ 사고현장에서 119 구급차량의 간호사와 구급대원이 위 환자의 사망을 확인한 것이 사실이라는 부분, ④ 위 환자에 대하여 의사의 검안을 받고 사체 검안서가 작성된 후 냉동창고에 안치된 것이 사실이라는 부분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아래에서는 위 각 부분의 사실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위 조 이 생존가능성이 있는 교통사고환자라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부분

먼저 위 인정과 같이 위 조 이 당시 생존가능성이 있었다는 보도는 없었으므로 위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없다.

또한 “냉동창고 생매장”이라는 자막의 보도가 원고의 위 주장과 유사하나 이 사건 방송의 목적이 다수인의 인명을 경시하는 영안실 운영을 고발하기 위한 것이고, 실제로 위 조

에 대하여 병원의 응급실을 경유하지 아니하였으며, 텔레비전의 자막은 내용을 간략하고 단적으로 표현하여 시청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보도내용을 보다 강렬하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어서 통상 다소 사실과 달리 사용될 여지가 있는 것이라면 위 자막에서 다소 과장된 용어나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진실한 내용의 보도범위에 포함된다 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역시 이유없다.

설사 위 자막보도가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내용을 암시한다고 하더라도 위 박 와 위 송 이 위 조 에게 동맥의 반응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박 등 이 구조대원에 불과하고 의사가 아닌 점, 그 당시가 사고 직후였다는 점, 교통사고환자는 사고로 인한 충격 때문에 맥박이나 호흡이 일시정지할 수 있고 이 때에 응급조치를 통하여 소생할 수도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조 이 위 영안실로 옮겨진 당시 생존가능성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자막 보도도 사실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3) 위 환자를 영안실로 옮겨 곧바로 냉동처리했다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부분이 사건 방송에서 “교통사고 구급환자가… 곧바로 영안실 냉동창고로 실려갔습니다.”, “조씨는… 막바로 병원 영안실로 실려 갔습니다.”, “가족들이 도착했을 때 조씨는 이미 냉동처리된 상태였습니다.” 라고, 또한 자막으로 “영안실 냉동창고 생매장”의 방송을 한 사실은 위 인정과 같은 바, 먼저 위 조 이 위 사고현장에서 막바로 위 병원의 영안실로 구급차에 의하여 호송된 사실 및 위 조 의 처와 그 아버지가 위 영안실에 도착했을 때 위 조 은 이미 냉동창고에 안치되어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그 부분에 관한 해당 위 각 보도는 사실과 일치함이 분명하여 정정보도의 대상이 아니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만 “교통사고 구급환자가… 곧바로 영안실 냉동창고로 실려갔습니다.”라는 보도와 위 자막보도가 환자를 영안실로 옮겨 곧바로 냉동처리했다는 원고의 주장과 일치하는 듯 하나, 이 사건 방송은 시간적 의미에서 환자를 영안실로 옮기자마자 신속하게 냉동처리했다는 취지의 보도가 아니라, 절차적 의미에서 환자가 사망확인을 위한 응급실 경유절차를 생략한 채 곧바로 냉동창고가 설치된 영안실로 실려갔다는 취지의 보도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보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고, 설사 위 각 보도를 환자를 신속하게 냉동처리했다는 의미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 조 이 위 영안실에 도착한 후 1시간 이내에 냉동창고에 안치된 것이 사실이고 텔레비전의 자막은 위와 같이 경우에 따라서는 다소 과장된 용어나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고 보면 위 보도는 전체적으로 진실한 보도의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위 조 이 생존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 자막으로 “교통사고환자 냉동실로 직행”이라고 보도한 점도 문제시하나, 당원의 검증결과에 의하면 위 자막보도는 이 사건 방송이 아니라 이 사건 방송을 예고하기 위한 당일 12:00경의 보도였는 바, 이 사건 방송에서 위 자막보도의 내용이 보도되어 위 자막과의 일치 여부가 확인되었고, 위 보도는 위와 같은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설사 위 용어나 표현에 과장이 있고 부적절하였다 하여도 위와 같은 이유로 전체적으로는 진실한 보도의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어서 역시 원고의 위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4) 사고현장에서 119 구급차량 간호사와 구급대원이 위 환자의 사망을 확인했다는 부분 위 박 와 송 이 위 조 의 동맥반응이 없는 것을 확인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 있으나 이는 구급요원들이 교통사고환자의 피해상태를 살피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이로써 사망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아니고(설사 구급요원들이 사망하였다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의사의 응급소생술과 사망판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2호증(갑 제 9호증의 21과 같다), 갑 제9호증의 15, 22, 23, 167, 248의 각 기재가 있으나 갑 제9호증의 34, 36, 170, 171, 갑 제10호증의 11의 각 기재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위 환자에 대하여 의사의 검안을 받고 시체검안서가 작성된 후 냉동창고에 안치되었다는 부분

위 조 의 시신이 냉동창고에 안치되기 전에 검안을 하고 시체검안서가 작성되었다는 원고의 위 주장에 관하여 이에 부합되는 갑 제2호증, 갑 제9호증의 27, 28, 67, 72, 73, 75, 76, 139, 152, 153, 195, 248, 250의 각 기재가 있고 이에 부합되는 듯한 위 김 작성의 시체검안서가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위 영안실은 적자운영의 개선을 위하여 시신의 확보에 주력하였고 그래서 시신을 확보하려 하던 위 영안실의 직원들이 위 조 이 위 사고현장에서

즉사하였다고 믿어 위 영안실로 직송한 점, 위 영안실로부터 원고의 집은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데 원고는 전화를 받고 옷을 입고 곧장 위 영안실로 출발하였다고 하고, 의사 김○○의 집은 차량으로 10분 이상 소요되는 거리에 있는데 운전사를 불러서 승용차를 타고 도착했다고 함에도 원고보다 위 김○○이 먼저 위 영안실에 도착했다고 모순되게 진술하는 점, 시신을 검안한 장소에 대하여 위 영안실 직원들의 진술과 위 김○○의 진술이 다른 점, 교통사고 직후에 급하게 시신을 확인하였다면 위 김○○으로는 최소한 검안시각, 사망원인, 시신의 특징 등을 알고 있어야 함에도 위 김○○은 검안시각이 당일 01:00경이라고 했다가 01:00경부터 02:00경이라고 번복하였고 사망원인도 우측두부가 부어 있었다면서 사망원인을 “두부손상”(뇌수손상이 아님)으로 기재하였으며, 시신의 특징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신체상의 이상 즉, 오른쪽 무릎에 절창상, 오른쪽 다리 전면부의 큰 문신 등을 지적하지 못하였던 점, 위 김○○이 당일 검안 직후에 위 조○○의 가족과 만나지 못한 점, 한밤중에 급하게 교통사고환자를 확인하는 것이라면 사인을 밝혀 사망진단서로 서류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급하지 않은 낮시간에도 작성할 수 있는 사망사실만을 확인하는 시체검안서를 작성한 점, 위 시체검안서의 이 부분이 위 김○○이 아닌 타인이 작성하였고, 그 필체가 모두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김○○이 위 영안실의 시체검안을 장기간 전담하여서 위 영안실에서의 시체검안과정을 잘 알고 있는 점, 위 김○○이 이 사건 방송 전과 그 후에 달리 진술하고 있는 점, 원고가 위 김○○이라고 주장하는 사고 직후 시신과 같이 찍힌 사람의 옷, 이마모양 안경, 손가락 등의 특징이 위 김○○의 그것과 다른 점, 위 김○○, 백○○은 원고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을 담당했던 자들이어서 쉽게 그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이를 각 믿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방송이 사실과 다르다면서 정정보도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8. 7.

재판장 판사 오 영 권

판사 이 홍 권

판사 김 지 현

정정보도문

문화방송(MBC)은 지난 1997. 6. 29.(일요일) 21:00에 진행한 뉴스데스크 시간에 “생존가능성이 있는 교통사고 환자 조○○씨가 나사렛예수병원 영안실 관계자에 의하여 영안실로 옮겨진 뒤 곧바로 냉동처리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는 내용의 방송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수사결과 사망자 조○○씨는 사고현장에서 119 구급차량 간 호사와 구급대원 등의 확인을 거치고, 그 후 의사의 검안을 통하여 두부손상으로 현장에서 즉사하였다는 내용의 사체검안서가 작성된 후에 사체보관고에 안치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종전 보도는 오보이므로 바로잡습니다.□

보도사실

구 분
배경화면
자 막
대 사
출 연

본방송
※나사렛예수병원
구급차
※영안실
냉동창고
생매장

교통사고 구급환자가 병원의 응급실로 가지 않고 곧바로 영안실 냉동창고로 실려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대전에서 고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기자
송고내용
※사고현장
※충남대병원병실
119소방대
※나사렛예수병원
구급차
※대전 유성구
도룡동 사고
현장

지난 달 21일 새벽 0시 10분쯤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에서 승용차를 타고 가던 24살
씨와 친구 씨가 다리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119구급요원들은 사고 차 안에 있던 전씨를 충남대병원으로 이송해 목숨을 건졌고, 몇 분

뒤에 구조된 조씨는 현장에 나타난 나사렛예수병원 구급차에 실렸습니다.

대전방송국

기자

※경찰 뒷모습

(호린화면)

“들것으로 실었다. 어디가냐 물었더니 나사렛병원으로 간다고 했다”

“들것으로 한 사람을 실고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열로 같거나고 했더니 나사렛병원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출동경찰

※예수병원

구급차

하지만 당시 병원 구급차에는 의사나 간호사 대신 영안실 직원들이 타고 있었고, 구급약품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기자

※응급실

나사렛예수병원까지 실려온 조씨는 응급실로 거치지 않고 막바로 병원 영안실로 실려갔습니다.

기자

응급실로 가지 않고 왜

기자

※병원 원무과

한숨소리

병원관계자

※분향실\영안실

사고 후 한 시간 정도가 지나 가족들이 도착했을 때 조씨는 이미 냉동처리된 상태였습니다.
기사

※조 씨 아버지

(흐린화면)

※ 숨진 조 씨

아버지

영안실 사체 염하는 사람들 둘이 가서 실고 와서 그 사람들이 넣었어요.

조 씨

아버지

구 분

배경화면

자 막

대 사

출 연

※사체검안서

조씨를 영안실 냉동고에 넣기 전에 검안하고 발급했다는 사체검안서, 엉뚱하게도 다른 의원
에서 발급했고, 인적사항 등 검안서 내용 대부분을 영안실 직원들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했
습니다.

기자

이게 이것도 선생님 글씨라구

기자

※나사렛예수병원

※나사렛예수병원

영안실 직원

이거 전부 인적사항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제가 쓴 것입니다.

영안실 관계자

※영안실 입구

※조씨의 사진

※영안실

※구급차

※영안실사무실

입구

검안 의사 김모 씨도 영안실에 도착했을 때 조씨의 사체가 이미 열어 있었다고 주장하다가
말썽이 일자 말을 바꾸고 검안시각과 조씨의 신체적 특징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기자

※책상에 앉은

검안 의사 하체

부분(흐린화면)

그냥 얼떨결에 얘기를 한 건데 많은 사람들에게 심려를 끼쳤다.

검안 의사 김모 씨 :

“그냥 얼떨결에 얘기를 한 건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심려를 끼쳐드렸습니
다.”

원장

대전에서 MBC뉴스

입니다.

기자□